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!

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

김 용 석 의원 입니다.

「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.

□ 서울시는 자치구 상호간의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고, 자치구의 긴급한 재해복구, 공공시설의 신설·보수 등 특별한 자치구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.

□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특별조정교부금 제도에 부합하도록 자치구의회에서 예산심의시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를 금지하여 자치구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하려는 것입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

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,
개정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만장일치로
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